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b> 을 감안하여 <b>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b>주식</b> 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b>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지수추적오차위험</b> 등이 있으므로 <b>투자에 신중</b>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b>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교보악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명단은 교보악사자산운용(주) 홈페이지 (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년 11월 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b>2024년 12월 22일</b>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	EH05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H0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EH058
수수료선취-오프라인-기관(A-F)	EH0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H0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H0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H062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여 임의해지 되거나 다른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등의 변경을 통하여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교보악사 그린디지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신중한 검토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성 제약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11.01)

##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 (EH056)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b> 을 감안하여 <b>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b>주식</b> 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b>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지수추적오차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b>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이 투자신탁은 콘트 분석을 통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 배당수익률 상위 기업 및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KOSPI를 아웃퍼포먼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거래대금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고배당주(high dividend yield)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치 팩터 (low valuation)의 시장대비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 펀드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콘트 분석을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여기에 액티브 전략을 가미해 추가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 비교지수</p> <p>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b>KOSPI 지수 * 100%</b>입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 <b>KOSPI 지수</b> :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주요경제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주가지수는 1964년 1월 4일 최초로 17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수정주가평균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1979년도에 구성종목 수를 35 종목으로 확대하여 한국종합주가지수(KCSI, Korea Composite Stock Index)로 변경된 바있습니다. 현행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시가총액가중방식지수로서 기존의 주가평균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3년 1월 4일에 도입하였으며,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p>

	주) 해당 지수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krx.co.kr">www.krx.co.kr</a>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 의 0.6% 이내	0.835	0.50	1.58	0.835	145	234	328	530	1,130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135	0.80	1.67	1.135	116	238	367	643	1,463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 의 0.3% 이내	0.585	0.25	1.20	0.585	90	152	218	360	782
		수수료미정구- 온라인형(Ce)	없음	0.735	0.40	1.35	0.735	75	154	237	416	948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b> <b>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 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b>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 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 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b>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 과시점</b>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 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실적추 이(연평균 수익률, 단 위 %)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 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4.11.0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수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회사는 추종하는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해당 비교지수를 추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지수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대폭 변경되거나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운용전략이 변경되거나,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u>오후 3시 30분(15시 30분) 이전</u>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u>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 (D+1)</u>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u>오후 3시 30분(15시 30분) 이전</u>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2영업일(D+1)</u> 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 에 환매금액 지급
	• <u>오후 3시 30분(15시 30분) 경과 후</u>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u>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u>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 방법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 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b>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b>수익자</b>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b>전환절차 및 방법</b>	해당사항 없음	
<b>집합투자업자</b>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b>모집기간</b>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b>모집(매출)총액</b>
<b>효력발생일</b>	<b>2024년 12월 22일</b>	<b>존속 기간</b>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집합투자기구의 종류</b>	<b>종류(Class)</b>	<b>집합투자기구의 특징</b>
	<b>판매 수수료</b>	<b>수수료 선취(A)</b>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판매 수수료</b>	<b>수수료 미징구(C)</b>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판매 경로</b>	<b>온라인 (e)</b> <b>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b>판매 경로</b>	<b>오프라인</b> <b>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b>기타</b>	<b>기관(F)</b>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 [목 차]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투자신탁의 개요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불 임] 용 어 풀 이**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	EH05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H0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EH058
수수료선취-오프라인-기관(A-F)	EH0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H0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H0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H062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파워배당주 증권투자신탁[주식]	EH05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H0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EH058
수수료선취-오프라인-기관(A-F)	EH0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H0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H0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H062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24.12.22	최초설정(예정)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대표전화 : ☎ 02-767-9600 홈페이지 :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4.11.0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운용경 력년수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지원	1984	팀장	-	-	-	-	11.97	7.81	15년 4개월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		

									- 한산인베스트먼트 리서치팀 리서치 - 앤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리서치, 운용 - 메리츠증권 멀티전략운용팀 운용 -현)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운용본부
--	--	--	--	--	--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억원)
최지원	0 개	0 억원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편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신탁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b>

		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기준)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최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

			기사채등")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	파생상품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주식·채권·통화·금리·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⑧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li> <li>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li> <li>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 할 수 있음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p>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p>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증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li> </ul>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li> </ul>	

	<p>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ul>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li>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li> <li>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li> </ol>	
신용등급하락시 조치사항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콘트 분석을 통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 배당수익률 상위 기업 및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KOSPI를 아웃퍼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거래대금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고배당주(high dividend yield)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치 팩터 (low valuation)의 시장대비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 펀드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콘트 분석을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여기에 액티브 전략을 가미해 추가 성과를 올리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배당모델 구성 방법

### Universe

- 보통주 시가총액 3000억(우선주 1000억)원 이상
- 거래대금 및 유동성 감안
- 3년 연속 배당 지급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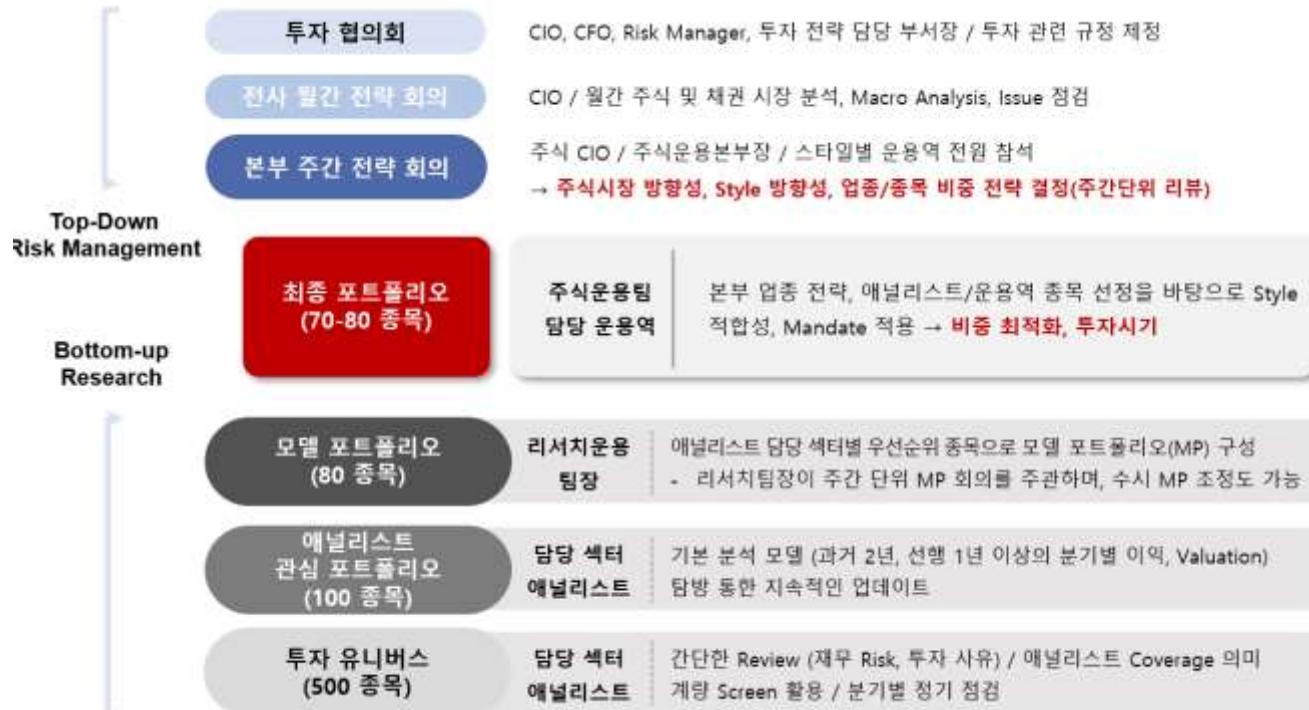
### Model Portfolio

-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 배당수익률 상위 5종목 시가총액 비중 편입
- WICS26 분류기준 종목배당수익률이 섹터 배당수익률보다 큰 종목 선정하여 배당수익률 가중 편입
-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중복선정 될 경우 보통주와 비중 배분
- 배당수익률 역사적 상단/하단 고려하여 유동적인 비중 조절

### Actual Portfolio

- 배당 MP 복제율 70% 이상 유지
- 배당수익률이 낮은 씨클리컬이나 고성장주의 경우 시총 비중 감안한 트레이딩 관점 접근
- 기계적 이익실현으로 포트 안정성 관리

## ② 투자 프로세스



### ③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KOSPI 지수 \* 100%]**입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 지수** :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주요경제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주가지수는 1964년 1월 4일 최초로 17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수정주가평균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1979년도에 구성종목 수를 35 종목으로 확대하여 한국종합주가지수(KCSI, Korea Composite Stock Index)로 변경된 바있습니다. 현행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시가총액가중방식지수로서 기준의 주가평균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3년 1월 4일에 도입하였으며,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 해당 지수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 위험관리

벤치마크(Bench Mark)로는 코스피(KOSPI)지수를 추종합니다. 내재가치 대비 할인된 가치추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수익률 대비 플러스알파(+@)를 추구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체계적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을 위하여 시장상황, 설정금액, 운용상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자산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 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종목별 보유한도 준수여부 점검
- 유동성 점검 등

※ 위험요인 관리방안은 법규, 규약, 수익자 운용지침, 내부 위험관리기준 등에서 정의되거나 내부 투자가이드 라인, 위험관리위원회/협의회 결정 등에 따라 수립되며, 이는 내/외부 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 운용자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2021년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시나리오 설정, 스트레스 테스트, 대응방안 수립,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하여 위험관리기준, 업무연속성 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리스크관리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등 내부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연적 재난, 기술적 재난 등에 대하여 5가지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 정의된 대응 및 복구계획에 따라 대내외 보고, 신규주문의 중단, 대체업무지로 이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시장지표의 급변, 대량환매의 발생, 운용자산에 대한 상환지연의 발생 등에 따라 4단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정의된 대응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영향분석, 유동성 확보대책 수립 및 시행, 평가가격의 조정, 대고객 설명, 환매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운용자산의 부실 또는 부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등의 내부규정에 정의되어 있으며 운용자산이 부실 또는 부도되는 경우 평가가격의 조정, 신규투자의 제한, 상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위험관리기준, 리스크관리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등 내부규정 제정을 통하여 유동성 리스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지표의 급변, 대량환매의 발생, 운용자산에 대한 상환지연의 발생 등에 따라 아래 4단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정의된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정상: Event 발생 및 시장지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2. 요주의: 자본시장에 대한 Event 영향분석, Event 관련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투자협의회를 통한 운용전략 조정, 보유자산의 신용분석 실시
3. 준위기: 리스크관리협의회를 통한 위기상황 판정 및 대응대책 수립, 1차 유동성 확보대책 실행
4. 위기: 비상대책반 구성을 통한 위기상황 대응, 협회 및 감독기관을 통한 업계공동 대응책 모색, 대고객 설명자료의 제공, 2차 유동성 확보대책 실행, 집합투자재산평가협의회를 통한 부도 등 상환지연 종목의 평가방법 결정, 유동성 부족시 환매연기절차 진행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이며, 투자자산의 매매를 통해 자본 이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의 펀드 내 편입 비중과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및 어음 등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편입 채권이 제때 상환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펀드의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어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정서상 신용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지수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지수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대폭 변경되거나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운용전략이 변경되거나,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회사는 추종하는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해당 비교지수를 추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자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 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 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가 완료되기까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 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산 상각에 따른 평가액이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

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등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교보악사 그린디지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됩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펀드의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

	<p>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p>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li> <li>*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li> </ul>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p>이 투자신탁은 배당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p><b>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b>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p>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p>

	<p>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p> <p>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b>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b>"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위험

##### **투자위험 등급 ( 2 ) 등급: 높은 위험 수준**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인 교보악사자산운용㈜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회사의 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	위험수준	분류기준
------	------	------

위험등급	위험수준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버리지형 등 투자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률이 20% 이상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매우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8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 8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률이 2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다소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li> <li>중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차익거래형 등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중간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원금보전 추구형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낮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증권에의 투자가 단기 국공채로 한정된 집합투자기구</li> <li>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매우 낮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주) 1. 위험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가.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BB+등급 이하의 채권, 파생상품 등
- 나. 중위험자산 : BBB-등급 이상의 채권, A3등급 이상의 CP/전자단기사채,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등
- 다.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A-등급 이상의 채권, A2-등급 이상의 CP/전자단기사채, 현금성 자산 등
- 2.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156주)간 펀드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분류기준표의 등급값을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함
- 3.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등급을 적용함
-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투자국가, 환해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 실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는 집합투자기구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따라 분류함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기관(A-F)	<p>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p> <p>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률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p> <p>다.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 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p> <p>라.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p> <p>마.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변액보험을 포함한다)</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p>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p> <p>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률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p> <p>다.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 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p> <p>라.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p> <p>마.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변액보험을 포함한다)</p>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3시 30분(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판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9)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자세한 정보는 (3) 환매수수료 또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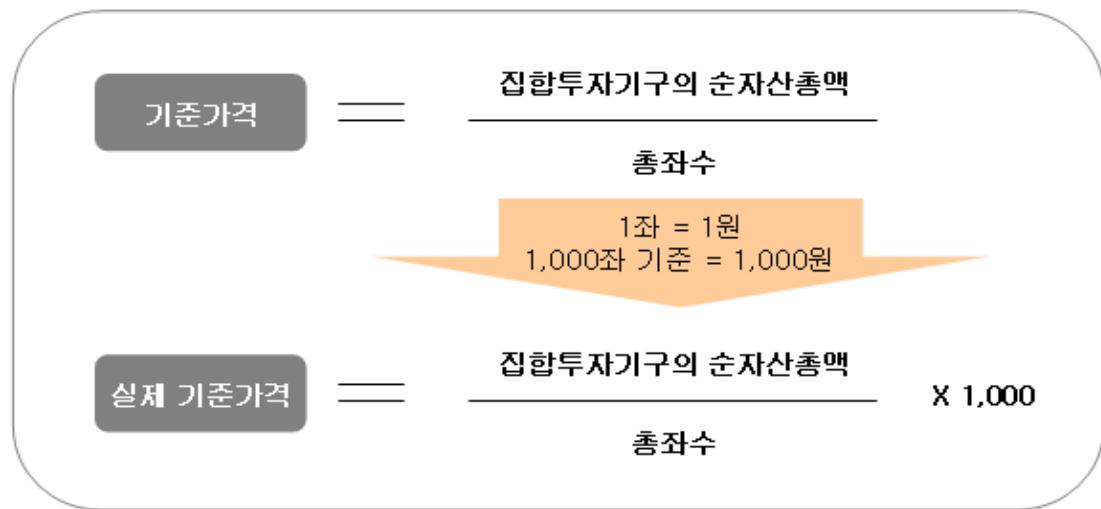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	-

####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 판매회사 영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①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①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⑨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	---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6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납입금액의 0.30%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기관(A-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률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	납입금액의 0.20% 이내	-	-	-

	<p>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 투자증권</p> <p>라.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 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 인</p> <p>마.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 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C-F)	<p>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수 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 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 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p> <p>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 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 의 법률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p> <p>다.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 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 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 투자증권</p> <p>라.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 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 인</p> <p>마.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p>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 협회,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종류(Class)별로 가입자격 및 수수료, 보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가입자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Class를 다수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 프라인(A)	0.30	0.50	0.020	0.015	0.835	1.58	-	0.835	0.835	-
수수료선취-온 라인(Ae)	0.30	0.25	0.020	0.015	0.585	1.20	-	0.585	0.585	-
수수료선취-오 프라인-기관(A- F)	0.30	0.015	0.020	0.015	0.350			0.350	0.35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30	0.80	0.020	0.015	1.135	1.67	-	1.135	1.135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30	0.40	0.020	0.015	0.735	1.35	-	0.735	0.735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등(C-F)	0.30	0.01	0.020	0.015	0.345		-	0.345	0.345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타비용예시: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자금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금융비용 예시: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REPO지급이자, 차입금지급이자, 대여금이자비용, 차입채권지급이자 등 각종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라 모펀드의 매매수수료 및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
금융비용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

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 ①의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2.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투자기간 (단위 : 천원)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5	234	328	530	1,130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5	234	328	530	1,130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52	218	360	78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0	152	218	360	782
수수료선취-오프라인-기관(A-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6	93	133	218	470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6	93	133	218	4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238	367	643	1,46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6	238	367	643	1,4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5	154	237	416	94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5	154	237	416	9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등(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5	72	111	195	44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5	72	111	195	44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택판매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산출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	-	-	-	-	-	-	-

※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

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나. 재무상태표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다. 손익계산서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라.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마. 주식의 매매회전율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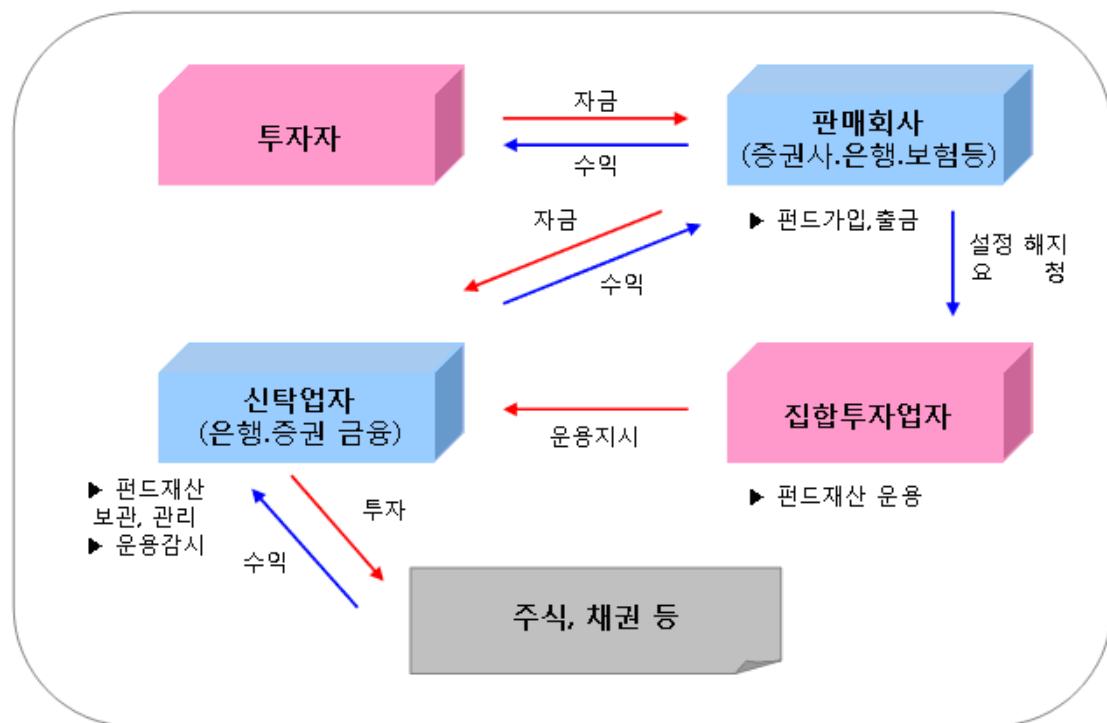
#### 나. 연도별 수익률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02) 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yoboaxa-im.co.kr">www.kyoboaxa-im.co.kr</a>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주)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주)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 나. 주요 업무

#####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하나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악사자산운용(주)에 있습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3.12.31	'22.12.31	항 목	'23.01.01~'23.12.31	'22.01.01~'22.12.31
현금 및 예치금	529	536	영업수익	411	415
유가증권	40	38	영업비용	253	254
대출채권	3	4	영업이익	158	161
유형자산	62	80	영업외수익	0	0
기타자산	142	129	영업외비용	0	1
자산총계	776	788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158	160
예수부채	0	0			
기타부채	127	142	당기순이익	125	123
기타부채	127	142			
자본금	300	3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349	34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자본총계	649	646			
부채 및 자본총계	776	788			

**라. 운용자산규모 (2024.11.01 기준 / 단위: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164	72,421	5,497	-	6,408	14,569	-	225	14,023	339	100,934	222,58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79 (02) 1566-2566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ibk.co.kr">www.ibk.co.kr</a>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2)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 : 02-6714-46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is.com

### 나. 주요업무

####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5월 설립 ( <a href="http://www.koreabp.com">www.koreabp.com</a> )

회사명	NICE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 )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11년 6월 설립 (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

###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

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교보악사자 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에 공시하고,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은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신탁계약등의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교보악사 그린디지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 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위험지표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계약금액
-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② '①'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주식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li> <li>-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li> </ul> </li> <li>2) Cyber주식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li> <li>-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li> </ul> </li> <li>3) 일반채권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li> <li>-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li> <li>-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li> </ul> </li> <li>4) 신규 발행 채권 인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li> </ul> <p>5) 외화표시채권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li> </ul>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p>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li> <li>-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li> </ul> <p>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li> <li>-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li> </ul>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효력발생일부터 1 개월이내
투자금액	2 억원(일시 납입)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 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li> </ul>	
<p>①당연 해지사유</p> <p>②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p> <p>③다른 투자자(자투자신탁)의 전액 환매로 해지 · 해산하는 경우</p> <p>④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 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p> <p>⑤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 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li> </ul>	

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이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고유재산 투자금의 집행을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불 임]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 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